

강원도립대학교 겸임교원 보수 및 수당 지급규정

(제정) 1998-11-23 규정 제040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제7조에 의한 겸임교원 보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지급범위) 겸임수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겸임교원에게 지급한다.

1.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
2.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

제3조(지급액) ① 겸임교원의 보수는 겸임수당으로 지급하되, 월정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주당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또는 실험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에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외래강사료 해당액을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방법) 월정수당은 매월 20일, 초과 강의수당은 익월 5일에 지급하되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교원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용하며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(1998. 11. 23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